

의안
번호

46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4. 1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소 형 준 의원 외 12명
- 나. 의안번호 : 제468호
- 다. 제출일자 : 2025. 03. 28.
- 라. 회부일자 : 2025. 04. 10.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안 제6조까지)
- 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및 처우개선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성북구체육회 및 성북구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인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3명¹⁾이 근무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2021년 1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전환²⁾되어 인건비의 기본급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와 수당은 시비 및 구비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근무 연차나 경력에 따른 차등 적용이 아닌 획일적인 보수체제로 인해 장기간 근무에도 기본급에 차이가 없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구청장의 책무)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1) 성북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8명, 성북구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명,

2) 문화관광부의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지급, 복리후생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처우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에 의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실태조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와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지원사업과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 안 제9조(지원)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복지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으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관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